

(參照)

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95-51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95. 12.

제 출 자 : 달서구청장
(기획감사실)

1. 제안이유

- 급격한 인구증가로 민원 업무 등이 폭주하는 지역에 대한 주민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부족인력을 증원하고

○ 재난의 예방·수습 등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증원하고자 함.

2. 관련근거

- 기획 12200-1058('95. 12. 7)
과대동 분동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승인
- 기획 12200-1059('95. 12. 7)
재난관리기구·정원 승인

3. 주요골자

정원관리기관	현행	조정
계	724	739
구본청	416	417
동	308	322

4. 개정조례(안) : 따로붙임.
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.

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제1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구본청 : 417명
2. 동 : 322명

부 칙

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, 제2조제1호의 구분청 정원은 1995년 12월 5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(생 략) 1. <u>구분청 : 416명</u> 2. ~3. (생 략) 3. <u>동 : 308명</u>	제2조(정원의 총수) (현행과 같음) 1. <u>구분청 : 417명</u> 2. ~3. (현행과 같음) 3. <u>동 : 322명</u>